7.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573號 1995. 4. 8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장입지금지대상지역)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이하 "공장입지금지지역"이라 한다)으로 고시하여야 하는 대상인 지역은 공장의 업종·규모등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금지되는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지정방법 및 절차"를 "고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의"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장입지금지지역의"로 한다.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지번·지적·도면 기타 공장입지금지지역을 명백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유도직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춘 지역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중 "처리기준등"을 "처리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법 제35조 제1항"을 "법 제61조 제1항"으로 한다.

①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에 관

한 처리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호 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재산이 폐도·폐하천·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다음 각호의 면적이하인 때를 말한다. 다만, 공장용지에 편입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0제곱미터
2.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제1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중 "1일 폐수배출량이 500세제곱미터"를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1993년 7월 1일 당시의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증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일 것
2. 기존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이내에서의 증설일 것
3.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3월 31일이전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11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조 제1항"을 "법 제28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법 제18조 제2항"을 "법 제28조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조 제4항 및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28조 제4항·법 제29조 제2항 및 법 제33조 제2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중 "법 제18조 제4

항"을 "법 제28조 제4항"으로 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9조 제1항"을 각각 "법 제29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중 "법 제28조"를 "법 제38조"로, "법 제18조 제3항"을 "법 제28조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법 제28조 제4호"를 "법 제38조 제4조"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29조 제1항"을 "법 제39조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출입 이행사항의 확인 면제)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미화 3만달러 상당액을 말한다.

제18조 본문중 "법 제33조 제2항"을 "법 제47조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법 제33조 제2항"을 "법 제47조 제2항"으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안"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또는 지역안"으로 한다.

제19조의 2 내지 제19조의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형식승인의 완화대상) 법 제5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로울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 피니셔
11. 콘크리트 살포기
12.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 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사리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제19조의 3(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법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

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3.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5.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6.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②법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2. 소음·진동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허가신청서상의 설치예정일에 10일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상의 설치예정일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 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정운영의 경우"라 함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동안 5분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 5(탐광 및 채광) 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정운영의 경우"라 함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동안 5분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둔다.

제21조 본문중 "법 제41조 제2항"을 "법 제67조 제2항"으로, 동조 단서중 "전화 또는 구두"를 "전화·모사전송 또는 구

술"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본문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44조 제1항의"를 "회의에 출석한 위원(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및 법 제70조 제1항의"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를 "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9일전"을 "7일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법 제44조 제1항 제2호"를 "법 제70조 제1항 제2호"로, "기재한"을 "명시한"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조사개시일 또는 진술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7일전에 조사 또는 진술할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거나 진술을 하여야 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등의 제출요구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시정조치권고등의 절차) 법 제7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하거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규제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 또는 개선기한

제26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원
2. 농림수산부
3. 통상산업부
4. 환경부
5. 보건복지부
6. 노동부
7. 건설교통부
8. 기타 당해 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가 폐도·폐하천등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이를 특례처분할 수 있는 면적기준을 군 및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완화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9조).

나.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지역안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장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영 제10조 제3항).

다. 수출입이행사항의 확인이 면제되는 수출대금 미회수금액 및 수입대금 미지급금액의 범위를 미화 3만달러상당액이하로 정함(영 제17조).

라.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신고만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를 불도우저·굴삭기등 21종으로 정함(영 제19조의 2).

마.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제의 원칙적인 신고제 전환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가제가 존치되는 지역을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또는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등 으로 정함(제19조의 3).

바. 화재·폭발등의 위험발생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례의 범위를 정함(영 제19조의 4).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